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8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7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('18.12.4) 반영

-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(안 제28조제4항)

나.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

-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략 규정사항 개정(안 제3조의2)
-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그 밖에 재정 운영에

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 위임사항 반영(안 제5조)

-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조치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(안 제22조 제1항)
-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‘층별 가중 적용방법’에서 ‘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’으로 개선(안 제27조)
- 2인 이상의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(안 제89조제2항)
-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비점 보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6. 7. ~ 6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5)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경제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경제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6호가목 중 “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”을 “취득·처분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3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제4조 전단 중 “작성하여”를 “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서식과 작성방법”을 “작성방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재산의 증감 및 현황)”을 “(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2조”를 “법 제92조 및 영 제52조”로, “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”을 “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”로, “현재액 보고서의”를 “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 그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공유재산관리계획서”를 “공유재산 관리계획서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초래하거”를 “주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토지위”를 “토지 위”로, “재산에 한하여야 하며, 토지에 대하여서”를 “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, 토지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하고자 하는 때”를 “하려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7조의2의 제목 “(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)”을 “(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대상)”으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명시하여야”를 “명확하게 적어야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”를 “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사용·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”를 “사용·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”를 “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준용규정)”을 “(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)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태만히”를 “게을리”로, “해지하고”를 “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,”로 한다.

제25조제3항 단서 중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 재개발구역내”를 “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”로, “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”를 “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산출”을 “계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.

1. 건물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+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
× (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÷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)
2. 부지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+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
× [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(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) ÷ 해당 건물의 연면적]

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대부료의 감면)”을 “(대부료 등의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

1. 마포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2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4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부하고자 하는”을 “대부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산출되는”을 “계산되는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2제1항 중 “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”을 “분할납부하는”으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32조 제3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”으로, “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”를 “대부료”로, “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전단 중 “비치하여야”를 “갖추어 뒤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리부”를 “대부정리부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
- 제34조제1항제8호 중 “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”을 “재개발사업 시행을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”을 “재개발사업 시행을”로, “같은 법 제10조”를 “같은 법 제12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9조제4항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마포구”로 한다.

제87조의2제2항 중 “신청하고자 하는 때”를 “신청하려는 경우”로, “징수유예 신청서”를 “징수유예 신청서”로 한다.

제88조제2항 중 “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”를 “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, “납부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88조의2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9조제2항 중 “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”를 “영 제84조제3항을 따른다”로 한다.

제91조 후단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9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관리책임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<u>기획경제국장</u>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,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,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관리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기획재정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기획경제국장</u>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,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.</p>	<p>제3조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기획재정국장</u>----- ----- -----</p>
<p>③ ~ ⑩ (생략)</p>	<p>③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의2(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	<p>제3조의2(심의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</p>
<p>1. ~ 5. (생략)</p>	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6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</p> <p>가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·처분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</p>	<p>6.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우, 취득·처분하고자 하는
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
경우,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
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
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
과하여 증감된 경우(다만,
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
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
나. (생략)

7.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
략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1. ~ 3. (생략)

4.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
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
가. 특별시·광역시 지역에 소
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
하 토지(해당 토지상의 건축
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
에서 같다)

나.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
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
지

- 취득·처분하려는 -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. 다
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
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
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
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
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
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
또는 용도폐지

다. 군 지역(광역시외의 군 지역 포함)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
 라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

제4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방법)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

제4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-----

 -----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-----
 ----- . -- 작성방법 -----
 ----- .

제5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)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--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--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 그 -----

 ----- .
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방법) ----- 공유재산 관

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부채납의 원칙) ① (생략)

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

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·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 하며,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

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7조의2(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) (생략)
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리계획서-----
-----.

제13조(기부채납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주거-----

-----.

제14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

① ----- 토지 위-----

-----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, 토지에 대하여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

----- 하려는
경우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·수익허가 대상)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용·수익허가) -----

----- 명확하게 적어야 -----

1. ~ 7. (생략)

제19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

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0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① ~ ③ (생략)

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제21조(준용규정) ①·② (생략)

제22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5조(대부료 등의 요율) ①·②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사용·수익 허가부의 비치)

----- 사용·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-----

제20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드
는 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① -----
----- 게을리

-----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, 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대부료 등의 요율) ①·②

(생략)

③ 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5 이상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신설 2012.2.23, 개정 2015.11.19., 2017.2.9>

④ ~ ⑥ (생략)

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. 다만,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
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재개발사업구역내-----

-----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-----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 ① ----- 계산-----

-----.

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.

1. 건물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+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× (대부 받은 자의

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

우

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

2

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

1

2.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

가.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

1

나.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

1

다.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

1

라.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

분의 1

건물전용면적 ÷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)

2. 부지면적 :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+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× [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(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) ÷ 해당 건물의 연면적]

<삭 제>

3.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
에는 부지평가액 전액

4.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
부하는 경우

가.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
분의 1

나.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
분의 1

다.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
액의 5분의 1

5.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
부하는 경우

가.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
분의 1

나.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
분의 1

다.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
액의 4분의 1

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
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
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
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
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
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. 이
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
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
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. {대부
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

<삭 제>

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) ×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÷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(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)}

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⑥ 마포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.

<삭 제>

⑦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, 주거용

<삭 제>

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(공용면적을 포함한다)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.

제28조(대부료의 감면) ① ~ ③
(생략)

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.

제29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

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

1. 마포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2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4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제29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마포구 금고 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31조의2(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)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.

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.

제32조(대부정리부의 비치)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이는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대부하려는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계산되는 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1조의2(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) ① -----
분할납부하는 -----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-----.
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-- 대부료--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-----
-----.

제32조(대부정리부의 비치) ① ---

갖추어 뒤야 ---. -----

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

4. ~ 7. (생략)

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)를 주

-----.

② ----- 대부정리부 -----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

행정안전부장관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----- 재개발사업 시행을 -----

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
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할 때

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
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
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
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
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
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
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
의 토지(서울특별시장이 같은
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
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
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
·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
다)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
가 당시의 점유·사용자로부터
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
·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
때

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
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
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
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
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

② -----
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재개발사업 시행을 -----

----- 같은 법 제12

9조 -----

③ -----
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
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4조의2(교환차금의 분할납부)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69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) ① ~ ③ (생략)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87조의2(변상금 징수의 특례) ① (생략)
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8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

-----.

제34조의2(교환차금의 분할납부) -
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
-----.

제69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-----
----- 마포구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7조의2(변상금 징수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 신청하려는 경우 -----
----- 징수유예 신청서 -----
-----.

제88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

(생략)

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88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)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.

제89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 (생략)

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91조(구유토지의 분필)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 한다.

제88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) -----
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
-----.

제89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영 제84조제3항을 따른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1조(구유토지의 분필) -----

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
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토지
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
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
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
의뢰한다.

제92조(준용) 공유재산의 취급에
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
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
의회신·지침·편람 등을 준용할
수 있다.

----- . ----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
한 법률」 -----
----- .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①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규정
사항 개정 ②미취업자 창업공간 및 마을기업 등이 공유재산 사용 시
사용(대부)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법령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는
것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

4. 작성자 : 기획경제국 재무과 이은희 (☎02-3153-8603)